민 •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(약칭: 민군기술협력법)

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90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 (기계로봇과) 044-203-4152 국방부 (국방연구개발총괄과) 02-748-5417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, 2, 29, 2009, 5, 22, 2013, 3, 23, 2013, 8, 6,>

- 1. "민・군기술협력사업"이란 군사 부문(이하 "군"이라 한다)과 비군사 부문(이하 "민"이라 한다)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・이전,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민수규격"(民需規格)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.
 - 가. 「산업표준화법」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
 - 나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
 - 다. 「물품관리법」제6조에 따른 표준
 - 라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
- 3. "국방규격"(國防規格)이란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.
- 4. "관계중앙행정기관"이란 국방부·산업통상자원부·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3조(민·군기술협력사업)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- 1. 민・군기술개발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민·군겸용기술개발사업: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, 부품,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개발사업
 - 나.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: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
 - 다.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: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
 - 라.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: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 계를 개발하는 사업
- 2. 민 군기술이전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민・군기술적용연구사업: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
 - 나. 민·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: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 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
- 3. 민・군규격표준화사업: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
- 4. 민・군기술정보교류사업: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, 전문기술인력, 연구개발 장비・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1. 민과 군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
- 2.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민·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
- 4. 국제협력 촉진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·조정한 후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3. 18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3. 8. 6.>
- 1. 민·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
- 2. 민·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
- 3. 민・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(財源) 조달계획
- 4. 민·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
- 5. 그 밖에 민 · 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
-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-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 · 조정한 후 매년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3. 18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 -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 -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. 16.>
 -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·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6조 삭제 <2009. 3. 18.>

- 제7조(민·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민·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 <개정 2013. 8. 6.>
 - 1. 민・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(이하 "기술개발과제"라 한다)의 발굴 및 선정
 - 2.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
 - 3.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
 - 4. 그 밖에 민・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
 -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.<개정 2011. 3. 9., 2013. 8. 6., 2016. 3. 22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국공립 연구기관
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5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
- 6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- 7.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
-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. 다만,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3. 8. 6.>
-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.
- ⑤ 기술개발과제,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 [제목개정 2013. 8. 6.]

제8조(민・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민・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- 1.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
- 2.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
- 3.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
- 4.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
- 5.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
-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9조(민・군규격표준화사업) ① 정부는 민・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 <개정 2013.

8. 6.>

- 1.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
- 2.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 선정 및 검증
- 3.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・개정
- 4.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·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3. 8. 6.>
-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④ 민・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[제목개정 2013. 8. 6.]

제10조(민・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민・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- 1. 연구개발성과, 전문기술인력, 연구개발 장비・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・관리
- 2.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
- 3.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그 밖에 민・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정부는 민·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.
-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·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8. 6.>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·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·관리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⑤ 정부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8. 6.>
- ⑥ 민·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1조(공동투자 방안의 강구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·기업·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 -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·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2조(민・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) ① 민・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・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.
 -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민 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
 - 2. 민・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・관리・평가 및 예산집행
 - 3. 민·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
 - 4. 민・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
 - 5.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제13조(연구기관의 지정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·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**제14조(계약의 특례)** ① 정부는 민・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매계약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>
 - ②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「방위사업법」제46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5조(참여기업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민・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・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「방위사업법」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(이하 "참여기업"이라 한다)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고려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- ③ 정부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또는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8. 6., 2020. 2. 11., 2024. 1. 9.>
- ④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,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·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·근무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8. 6.>
-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,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6조(재원의 확보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3. 18., 2013. 8. 6.>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3. 18., 2013. 8. 6.>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- 제17조(출연금의 지급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, 제12조에 따른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,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등"이라 한다)에게 민·군기술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8, 6.>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·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8조(기금의 지원) 정부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21., 2009. 5. 22., 2013. 8. 6., 2018. 12. 31.>
 - 1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
 - 2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
 - 3.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
 - 4. 그 밖에 민 · 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9조(세제 지원)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- 제20조(국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정부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·기기 등을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·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>
 - ② 제1항에 따른 대부, 양여, 사용 및 수익의 조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- 제21조(지식재산권 등의 특례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5. 19., 2013. 8. 6.>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해당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 여
- 2.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-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·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 [제목개정 2011. 5. 19.]

제22조(포상금의 지급 등) 정부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23조(보고·조사 등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8, 6,>
 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- 제24조(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제25조(비밀유지의 의무) 민・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25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제12조에 따른 민·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3. 8. 6.]

제26조(벌칙)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부칙 <제19990호,2024. 1. 9.>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②까지 생략

③ 민・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"을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"으로 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⑭부터36 까지 생략

제3조 생략